

제 호

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

교육기관명
(상호)

대표자
성명

생년월일

소재지

전화번호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
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고용노동청장

직인